국제 교환학생 교류 규정

제정 2011.01.01.
개정 2016.02.22.
개정 2023.03.1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와 외국 자매대학 간의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22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2.22.>

1. ‘외국 자매대학’이라 함은 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소재의 대학을 말한다. <개정 2016.2.22.>
2. ‘해외파견 교환학생’이라 함은 본 대학 재학생이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외국 자매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. <개정 2016.2.22.>
3. ‘외국인 교환 학생’이라 함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외국 자매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본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. <개정 2016.2.22.>

제3조(지원 자격)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2.22.>

1. 지원 시점에 2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재학 중인 자. 단, 편입생은 본 대학에서 2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<개정 2016.2.22.>
2. 전 학년 평점평균이 3.5점 이상인 자 <개정 2016.2.22.>
3. 해당국 언어로 수업이 가능한 자로서 외국 자매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 자격을 갖춘 자 <개정 2016.2.22.>
4. 학칙에 따라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5.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6. 기타 총장이 승인한 자 <신설 2016.2.22.>

제4조(신청) 해외파견 교환학생을 신청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교무팀에 제출한다. <개정 2016. 2. 22, 2023. 3. 16.>

제5조(선발방법) ① 학교성적, 공인어학시험성적, 면접성적 등을 종합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고,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단, 필요시 자체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2.22.>

②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외국 자매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을 해외파견 교환학생으로 최종 선발한다. <신설 2016.2.22.>

제6조(선발시기) 매년 파견 전 학기 초에 선발하되, 선발시기는 외국 자매대학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2.22.>

제7조(교육과정 이수)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 자매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 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1.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해외파견 교환학생의 교류기간은 6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, 교류기간은 자매대학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2.22.>
2. 교류기간을 임의로 단축 또는 초과하였을 때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, 해외파견 교

환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.

3.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전공분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22.>

4. 해외파견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외국 자매대학 과목이수에 관한 사항은 출국 전에 "외국대학 수학신청 및 학과 확인서(별지 제1호 서식)"을 통해 학과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 <개정 2016.2.22.>

제8조(교환학생의 수) 교환학생의 수는 호혜의 원칙에 따른다. 단, 교환인원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외국 자매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6.2.22.>

제9조(등록금 및 경비) ①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매 학기 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 자매대학의 등록금은 면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세부사항은 외국 자매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. <개정 2016.2.22.>

② 유학에 필요한 숙식비, 생활비 및 항공료 등은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22.>

제10조(장학금) ① 외국 자매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외국 자매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의 등록금 한도 내에서 보조한다.

② 교환학생 장학금은 해당학기 교내장학금과 이중 수혜할 수 없다.

③ 귀국 후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학생 장학금을 환수한다. <개정 2016.2.22.>

제11조(출국허가) 해외파견 교환학생의 출국허가는 교무팀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. <개정 2016. 2. 22, 2023. 3. 16.>

제12조(귀국보고)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해당학교 수학기간 종료 후 귀국하여 교무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, 소정의 "수학보고서"를 제출하고 등록 또는 등록휴학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22, 2023. 3. 16.>

제13조(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) <삭제 2016.2.22.>[제14조의2로 이동<2016.2.22.>]

제14조(학점인정신청)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외국 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귀국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<개정 2016. 2. 22, 2023. 3. 16.>

1. "외국대학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" <개정 2016.2.22.>

2. 외국 자매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 및 강의개요 사본(번역본 포함) <개정 2016.2.22.>

제14조의2(학점인정)<개정 2016.2.22.>[제13조에서 이동<2016.2.22.>] ① 외국 자매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여부는 "외국대학 취득학점 인정 신청원(별지 제2호 서식)"을 통해 소속 학과의 의견을 받아 교무팀에서 결정한다. <개정 2016. 2. 22, 2023. 3. 16.>

② 외국 자매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해당 학년 해당 학기에 본 대학에 설강된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, 그 외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2.22.>

③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 자매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만을 대상으로 Pass/Fail로 판정하며, 학점인정의 최대범위는 졸업이수학점 내 24학점까지로 한다.

④ 외국 자매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은 평점평균에 산입되지 않고 졸업이수학점에만 포함된다. <개정 2016.2.22.>

⑤ 인정된 학점은 교과목 명을 원어(한글 번역본 포함)로 성적표에 표기한다.

⑥ 귀국 후 졸업 시까지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의 외국 자매대학 이수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. <개정 2016.2.22.>

제15조(외국인 교환학생 관리) ① 본 대학에 재학하는 외국인 교환학생의 처우는 본 대학에 재학하는 내국인 학생과 동등하게 처우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22.>

② 수업 및 성적처리는 본 대학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6.2.22.>

③ 본 대학 재학 외국인 교환학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6.2.22.>

제16조(포기) 해외파견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 포기를 희망할 경우 "교환학생 포기각서"를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이후 교무팀에서 주관하는 모든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다. <개정 2016. 2. 22, 2023. 3. 16.>

제17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6.2.22.>

부칙

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 외국대학 수학신청 및 학과 확인서

성 명			
소 속	학과 : 학년 : 학번 :		
전 화 번 호		E-mail	
수학대학교명		학과(전공)	
수 학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총 개월, 개 학기)		

본교 과정이수 현황

학기이수현황	총 ____개 정규학기 이수			졸업예정	년 월
학점취득현황	구분	기준학점	취득학점	잔여학점	비 고
	교양				
	전공				
	교직				
	일반선택				
	전적대학인정학점(편입생)				
	계				

외국대학 수학 예정 교과목 (학생 작성)				외국대학 수학 허가 교과목 (학과 작성)				
연번	이수학기	영문 과목명	학점	구분[1]	허가[2]	불가	학점[3]	비고
1	-							
2	-							
3	-							
4	-							
5	-							
6	-							
7	-							
8	-							
계	총 ____과목			총 ____과목 ____학점 허가				

본인은 학칙 제34조 및 국제 교환학생 교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대학 수학을 신청하며, 위의 외국대학 수학 허가 교과목에 따라 귀국 후 정규학기 내에 졸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신청학생 (인) (년 월 일)

위 교환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과목수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학업계획을 이행하도록 지도하였으며, 위에 정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.

학과장 : (인) (년 월 일)

※ 붙임 : 강의개요서 및 수업시수표 (번역본 포함)

교학처장 귀하

경유	학부장	교학팀장

1) 구분 : 01 교양, 02 전공, 03 일반선택
2) 허가/불가에 ○ 또는 ×로 기재하고, 인정 가능한 예상 학점수를 표기한다.
3) 수학허가 교과목 및 학점은 본 대학 교과과정에 따르고,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하며, 최대 24학점까지 허가한다.

【별지 제2호 서식】 외국대학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

성 명			
소 속	학과 : 학년 : 학번 :		
전 화 번 호		E-mail	
수학대학교명		학과(전공)	
수 학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총 개월, 개 학기)		

외국대학 취득 사항						본교 학점인정 사항			
연번	이수 학기	영문 과목명	수업시수	학점	성적	구분[1]	학점	성적	비고
1	-		주 시간(총 주)						
2	-		주 시간(총 주)						
3	-		주 시간(총 주)						
4	-		주 시간(총 주)						
5	-		주 시간(총 주)						
6	-		주 시간(총 주)						
7	-		주 시간(총 주)						
8	-		주 시간(총 주)						
계	총 ____과목 이수 ____학점 취득					총 ____과목 ____학점 인정			

본인은 국제 교환학생 교류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인정을 신청합니다.

신청학생 _____ (인) (년 월 일)

신청자의 학점인정 신청에 대하여 학과 교수회의 결과 위와 같이 취득과목·학점·성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인합니다.

학과장 : _____ (인) (년 월 일)

※ 붙임 : 1. 성적증명서 원본(영문)
2. 강의개요서 및 수업시수표 (번역본 포함)

경유	학부장	교학팀장

교학처장 귀하

1) 구분 : 01 교양, 02 전공, 03 일반선택